

#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

## 심 사 보 고

1993. 12. 17

### 1. 심 사 경 과

교육사회위원회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 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12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12월 13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

○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3. 12. 16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교육청 관리국장 신 재 철 )

가. 폐 지 이 유

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와 입학할 중학교의 추천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교육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4004호, 93.11.13)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○ 교육법시행령 제69조(입학 등의 허가) 제5항에 근거.

### 3. 검토 의견

( 전문위원 김 영 만 )

본 폐지조례안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입학할 중학교의 추첨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법시행령(대통령령 제 14004호, 1993.11.13)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하려는 것이며,

한편 당해 조례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그기간의 경과로 폐지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, 폐지조례안의 제명은 ○○○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하고, 안 본문에 ○○○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 없 음 "

5. 토 론 요 지 : " 없 음 "

6. 심 사 결 과 : " 원 안 가 결 "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 없 음 "

8.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

가.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 중학구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.